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0. 1. 16.] [고용노동부예규 제162호, 2020. 1. 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

제2조(설치 및 기능)

제3조(구성)

제4조(위원의 자격)

제5조(위원의 임기)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

제7조(회의의 운영)

제8조(시험의 관리·운영 등)

제9조(수당지급 등)

제10조(운영세칙)

제11조(재검토기한)

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



한 규정

[시행 2020. 1. 16.] [고용노동부예규 제162호, 2020. 1. 9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산업보건과), 044-202-7739

- **제1조(목적)** 이 예규는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제106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 및 기능)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(이하 "지도사"라 한다)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 지도사시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
 - 2.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
 - 3. 시험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시험 시행상의 문제 조정에 관한 사항
 - 5.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
 - 6. 그 밖에 지도사시험위원회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당연직위원 3명 이내 및 민간위원 5명 이내를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.
 - ③ 부위원장은 공단 능력평가이사로 한다.
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.
- 제4조(위원의 자격)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장 및 공단 국장·실장급으로 한다.
 -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.
 - 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시험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
 - 2. 해당 시험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
 - 3. 해당 시험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4. 해당 시험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5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실장급 직위 이상에 있는 사람
 -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 람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험분야와 관련 있는 협회, 단체, 또는 전문가에게 위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
- 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-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시험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
- 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7조(회의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)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 - ⑤ 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·비치할 수 있다
- **제8조(시험의 관리·운영 등)** ① 공단은 지도사시험의 출제, 시행 및 채점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.
 - ③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최종 합격자명부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- ④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, 합격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제9조(수당지급 등) ①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과 출제·면접 위원 및 시험관리·감독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- 제10조(운영세칙) 위원장은 이 예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.
- 제11조(재검토기한) 고용노동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162호,2020.1.9.>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